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57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0. 8.

판결 선고 2024. 11. 19.

주 문

-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. 3. 28.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3. 4. 19. 접수 제7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배예선

별지